

서울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20408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2040851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8다22302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6 선고 2017나201636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가합7528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무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식, 김수지, 장현주

변론종결 2022. 5. 11.

판결선고 2022. 6. 22.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가합75285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6. 선고 2017나2016363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8다22302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2015. 6. 11. 체결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796,674,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 하루 동안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96,674,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 하루 동안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돈 전부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소송의 진행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C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위 청구취지

부분 기재와 같다). 이에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양도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면서, C과 피고 사이에 2015. 6. 11. 체결된 양도계약을 947,060,8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947,060,85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환송 전 당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당심으로 환송하였다.

마.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부분(환송 전 당심 법원이 일부 인용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의 나.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으로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판단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 3, 9, 10호증, 을 제1, 2,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1)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 134억 7,500만 원으로 하고, 그 세부내역은 ① 이 사건 부동산 대금 60억 원(토지 35억 원, 건물 25억 원), ② 기계기구 등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대금 17억 원(기계기구 2억 원, 차량과 유체동산 15억 원), ③ 각종 인·허가권을 비롯한 일체의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 대금 48억 7,000만 원으로 구성된다(제3조). (2) 이 사건 양도대금 중 계약금 10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한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양도대금에서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채무 등을 공제한 잔금 479,115,529원은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 후 지급한다. 다만 채무 공제 내역은 계약 체결시 추정한 것이므로 채무 공제 내역이 변경될 경우 잔금을 정산한다(제4조).’라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47억 원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은 약 66억 원 이상으로 그 시가를 초과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은 그 시가보다 훨씬 높고,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시가와 대금을 모두 초과한다. 한편, C의 2014년도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이 사건 동산의 가액은 2014. 12. 31. 기준 약 13억 원인데,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동산의 대금은 C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가격보다 높다.

다) 도축업을 영위하는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거나 경매절차 등을 통해 도축업의 영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 제1, 2항 참조). 따라서 C의 도축업 영업권을 그 영업용 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이나 이 사건 동산과 분리하여 따로 양도할 수 없다. 이 사건 영업권의 대금은 48억 7,000만 원으로 이 사건 전체 양도대금 중 약 36%를

차지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동산의 대금이 상당한 가격으로 책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권 대금 역시 상당한 가격으로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피고는 2015. 6. 12. C에 이 사건 양도대금 중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양도대금은 그 이후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이로써 C의 소극재산 상당 부분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이 C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마)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C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체결되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양도대금 대부분은 C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다. C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그들이 우선변제를 받도록 하였다는 사정도 찾기 어렵다.

바) 결국, 이 사건 양도계약은 C의 채무변제를 위한 것이고, 양도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양도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지원, 판사 이재찬, 판사 김영진